

위 임 장

본인은 2019년 3월 8일(금)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삼화페인트공업(주)의 제 72기 정기주주총회(그속회, 연회 포함)에서 권유자 삼화페인트공업(주)이 지정하는 자(허귀행, 김종성, 김경식) 중 1인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1. 주주번호 :
2. 소유주식수 : 주
3. 의결권 있는 주식수 : 주
4. 위임할 주식수 : 주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번 호	주주총회 목적사항	찬성	반대
제 1 호	제 72 기(2018.1.1 ~ 2018.12.31)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)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		
제 2 호	정관 일부 변경의 건	제 2 조(목적)	
		제 4 조(공고방법)	
		제 9 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	
		제 11 조(명의개서대리인)	
		제 12 조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	
		제 15 조의 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	
		제 16 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	
		제 29 조(이사의 수)	
		제 33 조(대표이사등의 선임)	
		제 34 조(이사의 직무)	
		제 43 조의 2(외부감사인의 선임)	
	부칙(개정)		
제 3 호	이사 선임의 건	제 3-1 호 사내이사 후보 김장연	
		제 3-2 호 사내이사 후보 류기봉	
		제 3-3 호 사외이사 후보 공용표	
제 4 호	감사 선임의 건		
제 5 호	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제 6 호	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		
제 7 호	임직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	4. 퇴직급여의 산정	
		부칙(개정)	

※ 의안의 찬반표시는 해당란에 ○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 각 의안에 대한 찬반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란일 경우, 해당의안 표결 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(뒷면에 계속)

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
- 주주총회 시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 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목	지시내용

주 주 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 : 년 월 일 시